

의안번호	2212383
의 퇴 인	송재봉 의원
회 답 일	2025. 11. 25.
추 계 번호	25A46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1인 자영업자와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고등 및 비상벨 등 안전 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975억 5,700만원으로 추계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1인 및 여성 자영업자 안전설비 지원 (안 제11조의2제1항제2호)	497,557	-	-	-	-	497,557	99,511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2 신설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여성 소상공인(대표자가 여성인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여성인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소상공인이 고용한 여성 근로자 포함)이 사업에 직접 관련된 활동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의 회복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금 지급, 의료제공(치료비 지원 포함), 심리 상담, 법률구조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금 조정 등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1조의2 신설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 (현황조사)	2026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통계전담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예산 96억 5,000만원(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기타 정책조사·연구 예산 포함)이 반영되어, 기존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현황을 함께 조사하거나 기 편성된 민간위탁예산으로 위 사항을 조사하는 등 추가적인 예산 편성 없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사업명(회계, 코드): 소상공인성장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7)
		○ (설비지원)	-
		× (피해회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 피해를 입은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의료 제공 및 심리 상담, 법률 구조 등을 지원할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이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은 범죄 피해 대상 소상공인의 수와 재정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원 사항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상황에서 ¹⁾ 개정안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소상공인의 수와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며,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 규모 등을 추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요액을 추계할 수 없음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스마일센터 심리 상담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치료비 지원 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1인 및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상황 시 위험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경고등, 비상벨 및 컨트롤러를 지급하는 데 따른 재정 소요를 추계
 - 개정안은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이하 “안전설비”)의 예시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지원 대상 설비의 종류를 특정할 수 없으나,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실시 중인 “안심경광등 지원 사업”²⁾을 참고하여 경고등 및 비상벨과 이를 작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컨트롤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①경고등은 긴급신호 시 점멸등과 고음량의 음원이 제공되는 기기, ②비상벨은 버튼을 눌러 무선으로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기, ③컨트롤러는 앱 페어링 등을 통해 점멸등 및 비상벨 장치 작동과 긴급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기기로 가정
- 재정소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구분하지 않고 산출
 -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설비 지원 사업의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
 - 다만, 현 시점에서 각각의 재원 부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구분하지 않고 재정소요를 총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가정
- 안전설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수는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 통계를 준용하여 추계

2) 서울특별시 안심경광등 지원 사업 지급 물품

안심경광등	비상벨	스마트허브	사인보드
			

자료: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5.5.27.), “서울시, 나홀로 사장님 위한 ‘안심경광등’ 올해 1만 세트 확대 지원

- 현재 1인 소상공인 사업체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소상공인실태조사」(표본조사)가 있으나, 해당 조사의 경우 2023년까지의 통계만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연도에 조사 결과를 추정하기 위한 모집단을 “기업통계등록부”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년 대비 소상공인 수가 현저히 크게 산출됨³⁾
- 이에 해당 통계를 활용하여 1인 소상공인의 수를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여기에서는 「소상공인실태조사」 대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여성 자영업자” 통계⁴⁾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 개정안 제11조의2제1항⁵⁾은 “여성 소상공인”의 범위에 대표자가 여성인 소상공인 외에도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여성인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고용원이 있는 남성 자영업자”이더라도 여성 상시근로자의 비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자영업자 사업장의 성별 상시근로자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함

□ 2026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1인 및 여성 자영업자 전체에 대하여 1명당 1세트(경고등, 비상벨 및 컨트롤러)의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되, 그 이후의 창업 및 폐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른 1인 소상공인 사업체 수

(단위: 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2,740,227	2,771,086	4,126,531	4,117,458	4,124,202	5,960,788
1인 소상공인	1,069,373	1,006,336	2,049,276	2,107,311	2,156,353	3,946,808
－ 남성	484,257	466,730	1,105,139	1,170,733	1,183,169	2,155,823
－ 여성	585,116	539,606	944,137	936,578	973,184	1,790,985

주: 조사 결과 추정을 위한 모집단은 2018~2019년 전국사업체조사(간판 기준) → 2020~2022년 전국사업체조사(등록 기준) → 2023년 기업통계등록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4) 자영업자는 고용형태나 경제활동 방식을 기준으로 정의한 것으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 요건 모두 충족)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음. 다만, 해당 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의 상시근로자 요건(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또는 10명 미만일 것)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영세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을 고려할 때 상당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기에서는 자영업자 통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함
- 5) 안 제11조의2(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대표자가 여성인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여성인 소상공인을 말한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창업 및 폐업이 빈번하며, 안전설비를 지원받은 이후 폐업하는 자영업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추계기간 동안 창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신규로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고려하여야 함
 - 다만, 1인 및 여성 자영업자의 창업 및 폐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추계 시작 연도인 2026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1인 및 여성 자영업자 전원에게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그 이후의 창업 및 폐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 개정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안전설비는 점포의 면적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영업자 1명당 1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지원한 안전설비는 비용추계를 위한 사업량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이상에서 2026년 기준 1인 및 여성 자영업자 전체에게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정확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안전설비를 지원받은 자영업자는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추진 현황과 1인 및 여성 자영업자의 안전설비 보유 현황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산출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 여건과 안전설비 보급 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각 물품은 2026년에 모두 지급 완료되어 해당 연도에 소요 비용이 일괄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안전설비의 단가는 서울특별시 안심경광등 지원 사업에 따른 1세트당 조달 단가를 준용하되, 2026년의 소요 비용임을 고려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의 수는 2025년 8월 기준 424만 1,000명, 고용원이 있는 여성 자영업자의 수는 2025년 8월 기준 41만 8,000명 등이며, 2017~2025년 통계를 기반으로 각각 추계하면 2026년 1인 자영업자의 수는 437만 4,000명, 고용원이 있는 여성 자영업자의 수는 39만 3,000명으로 산출
 -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여성 자영업자의 수를 기반으로 각각 선형 추세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표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있는 여성 자영업자 현황(2017~2025년)
(단위: 천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53	4,030	4,127	4,193	4,249	4,336	4,370	4,306	4,24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80	1,651	1,535	1,363	1,301	1,354	1,413	1,439	1,435
－ 남자	1,169	1,221	1,144	997	960	965	1,023	1,030	1,017
－ 여자	411	430	391	366	341	389	391	409	418

주: 각 연도 8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추계의 전제에서 자영업자 1인당 1세트의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안전설비 지원 개수는 2026년 1인 및 여성 자영업자 수 추정치와 동일하게 476만 7,000개로 추계
- 서울특별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안심경광등 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할 물품의 1세트당 조달 단가는 10만 2,400원으로, 해당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6년 기준 단가는 10만 4,400원으로 추계

[표 3] 서울특별시 안심경광등 지원 사업 제공 물품 조달 단가(2025년)

구분		금액
	안심경광등(A)	1,004,700,000원
	외부 사인보드(B)	19,438,650원
	합계(C=A+B)	1,024,138,650원
수량(D)		10,000개
단가(C/D)		102,414원

주: 1. 최종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2. 안심경광등 세트(안심경광등,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 허브) 일괄 구매
 자료: 서울특별시

□ 이상의 사업량에 단가를 곱하면 소요 비용은 4,975억 5,700만원으로 추계

- 약 476만 7,000개 × 약 10만 4,400원 = 4,975억 5,700만원
- 위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은 2026년에 전액 지출되고, 2027년 이후의 창업 및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추계기간 중 2026년 외의 기간에 대한 소요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1인 및 여성 자영업자 안전설비 지원	497,557	-	-	-	-	497,557	99,5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서울특별시 안심경광등 지원 사업의 지급 품목을 준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지원 대상 안전설비의 종류에 따라 조달 단가가 달라질 것이므로 실제 소요 비용은 추계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수를 추계할 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있는 여성 자영업자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창업 및 폐업을 고려하지 않음
 - 고용원이 있는 남성 자영업자 사업장 중 여성 상시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장은 자료 부재 등의 한계로 고려하지 않음
- 2026년 기준으로 추정된 1인 및 여성 자영업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1인당 1세트의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지원 대상자 수와 지원 기준, 예산 투입 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